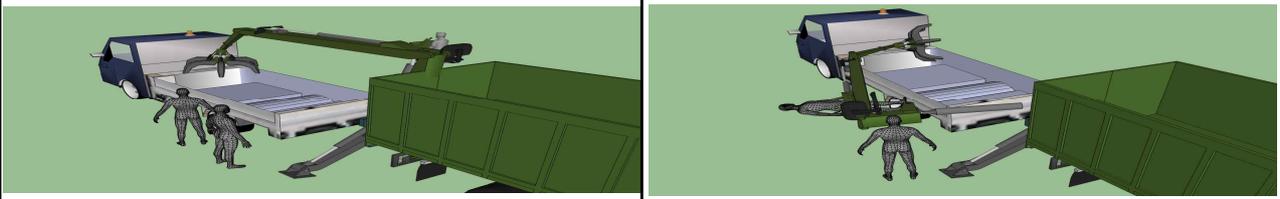


이동식크레인 붐대에 맞아 사망

재해 개요

2018.11.22.(목) 11:15분경 울산시 북구 소재의 OO철재내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트럭내 철판(약 2ton 분량, 개당 20kg) 하차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의 **연장구조물 등의 구조부분(컬럼 하단부)**이 파단 되면서 철판을 판매하러온 피해자가 연장된 붐대에 맞아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12:02분경 사망

재해 발생 상황도



재해 발생 원인

- **이동식크레인 정기검사 및 정비 미실시【시행령 제28조의 6】**
 - 이동식크레인(3톤 이상) 소유 또는 작동하는 자는 정기검사, 작업전 검사 등을 통하여 그 기계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없이 지속적으로 사용
- **이동식크레인 설계기준 준수【규칙 제147조】**
 -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크레인 설계기준(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)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하중능력을 초과한 과하중 상태로 하차작업 실시
- **출입금지구역의 설정【규칙 제14조 2항】**
 -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작업반경내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
- **중량물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【규칙 제38조】**
 - 사업주는 중량물취급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이를 미준수
- **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【규칙 제32조】**
 -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한 상태로 작업

재해 예방대책

- **이동식크레인 정기검사 및 정비 철저**
 - 기계를 소유 또는 작동하는 자는 정기검사, 작업전 검사 등을 통하여 그 기계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수리 후 사용
 -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인양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장비제원표에 의해 허용 작업반경과 허용하중 이내에서 작업
- **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설정**
- **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**
 -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 상태, 취급방법, 운반경로, 사용장비 상태 등이 포함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해 작업하여야 함
- **보호구의 지급 등 준수**
 -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 시 사업주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화 등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 및 작업 실시

